

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심사보고서

2006. 1. 1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월 10일

다. 상정일자 : 제118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(2006. 1. 19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도 봉 주

가. 제안이유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,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,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우리구 합정동소재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을 포함한 양화진 성지공원 방문객이 그간 양화진 성지사업의 활성화로 급증하는 방문객 수요에 비해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공급시설물이 매우 부족한 바, 체계적인 홍보 및 안내역할이 가능한 홍보관 건립(지하4층, 지상4층 연면적 2,391.68㎡)을 추진코자 함.

○ 총소요예산 3,617백만원(건축비 및 부대시설비용 포함)을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전액 시설비용 부담 설치·별도의 협약서 작성·체결(기부채납)

○ 사업개요

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단위:백만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(성명, 주소)	비 고
지목	소재지	면적(m ²)					
대지	합정동 142-1	474	3,617	2007년	홍보관 건 립	소유자 : 마포구 성산동 275-3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준공예정인 양화진 성지공원 홍보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동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.

<주요내용>

○ 동 계획안에 의하면 양화진 성지공원 홍보관의 위치는 합정동 142번지 1호상 대지 474㎡(약 144평, 소유자 마포구)에 지하4층, 지상 4층 연면적 2,391.68㎡(약 724평) 규모로 2007년도에 건립하고, 건립 비용 36억1,700만원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전액 부담하며, 건립한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 기부 채납한 후, 건립된 홍보관 일부를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가 무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음.

<검토의견>

○ 합정동 소재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과 양화진 성지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날로 급증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체계적인 홍보 및 안내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동 홍보관을 건립함으로써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건축비를 전액 부담하여 신축한 홍보관을 구가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동 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
홍보관 건립부지(구유지)에 동 홍보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 대지사용을 승낙할 시에는 홍보관이 신축된 후에 이루어질 기부채납 절차와 직접투자비를 상계한 무상사용면적 및 무상사용기간 등의 허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홍보관 신축 공사비는?
- 답변요지(장종환 문화체육과장) : 약 36억원임.
- 질의요지(전완수 위원) : 홍보관 설립예정지 땅값은 공시지가로 산정합니까?
- 답변요지(장종환 문화체육과장) : 감정가로 산정함.
- 질의요지(유응봉 위원) : 준공과 동시에 마포구에 기부 채납합니까?
- 답변요지(장종환 문화체육과장) : 예. 그렇습니다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案)

의안 번호	
--------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6. 1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,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,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우리구 합정동소재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을 포함한 양화진 삼지공원 방문객이 2간 양화진 성지사업의 활성화로 급증하는 방문객 수요에 비해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공급시설물이 매우 부족한 바, 체계적인 홍보 및 안내역할이 가능한 홍보관 건립(지하4층, 지상4층 연면적 2,391.68㎡)을 추진코자 함.
- 총소요예산 3,617백만원(건축비 및 부대시설비용 포함)을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전액 시설비용 부담 설치 - 별도의 협약서 작성·체결(기부채납)
- 사업개요

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단위:백만원)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(성명, 주소)	비고
지목	소재지	면적(㎡)					
대지	합정동 142-1	474	3,617	2007년	홍보관 건립	소유자 : 마포구 성산동 275-3	

3.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,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.
-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
-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, 제37조, 시행규칙 제29조

【홍보관 건립 위치도 및 현황사진】

